

소프트웨어 개발과 법적규제

김형만†

요 약

넵스터(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웨어(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任)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넵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 본다.

주제어 : 넵스터,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기여책임, 대위책임

A Study on Software Development and Legal Regulation

Hyung-Man Kim†

ABSTRACT

Internet users and copyright holder have been at the center of a severe legal dispute because file-sharing soft(P2P) through Napster aggravates the violation of copyright as well as takes on the world. Though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hold users a criminal penalty for the illegal use of various computer programs, I think that if the supply of a computer program is generally within a circle of development act, program developer ought not to hold users criminally liable for the unintended illegal act of users.

Two main issues are addressed in this work: (i) the basis and validity of legal responsibility and condemnation that appear in the precedent set as to P2P in America, Japan, and Korea. (ii) the necessity of both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efficient legal regulation of copyright holder. For this purpose, software development and legal regulation are reviewed and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criminal law.

Key Words : Napster, File-sharing soft, Copyright violation, Contributory, Vicarious Liability

†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부교수

논문접수: 2011년 9월 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1년 10월 5일

* 본 논문은 2011년 광주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서론

최근 저작권법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화혁명이 몰고 온 인터넷기술의 발전과 법과의 충돌이 잦아졌다. 그럴수록 저작권침해행위는 증가할 개연성이 증가하여 [8],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은 기존의 법과의 끊임없는 간섭과 논쟁 속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의 영상·화상·음악·문서·프로그램 등과 같은 디지털데이터는 거의 코스트(비용)를 지불하지 않아도 완벽한 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확산되고 또 공유되는 성질까지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저작물들을 추구·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법하게 침해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가능하게 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이것을 온라인상에 제공한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Sony Betamax사건(1984년)[12]에서 “기술은 중립적이고, 그 상당한 부분 비침해적 용도로 사용된다면 침해가능성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기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소니원칙을 확립하여 긴장관계에 있던 과학기술과 법 사이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1년 냅스터(Napster)가 시도한 P2P기술¹⁾에 의한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산업의 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냅스터사가 그 시스템 사용자에게 의한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그 행위를 조장·방조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을 인정한 이래[7], 각국은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을 위법하게 이용자에게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개발자는 그 개발 및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지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비난의 근거가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효율적인 권리자의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소프트웨어와 법적규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1호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나 그 관련 장치들을 작동시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기반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정보유통에 중요한 수단이 된지 이미 오래다. 특히 정보유통에 있어서 P2P는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과 공유라는 인터넷 기본정신에 가장 잘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기술이 개발자가 의도하였던 또는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초기 불완전한 기술은 개량된 기술을 낳게 되고 다양하게 응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은 사회적·경제적·법적 관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최근 P2P에 대한 저작권적 평가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술은 개발자가 의도하였던 바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타인의 권리나 재산 또는 인격적 이익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

종래 P2P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대부분 저작권침해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유형을 보

1) 초고속 네트워크시대의 도래로 개인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교환도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람과도 매우 쉽고 또한 저가로 교환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개발된 전자파일교환기술의 총칭을 Peer to Peer(P2P)기술이라고 한다. 즉 불특정다수의 컴퓨터가 상호 접속하여 직접파일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형식을 말하며, 여기서 사용되는 파일을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또는 P2P공유 소프트웨어라고도 한다.

면 침해행위에 중대한 관여를 한 「직접침해형」과 침해의 기여에 불과한 「간접침해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판례에 의한 구별법이다. 그러나 「직접침해」, 「간접침해」에 관한 양자의 구분조차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²⁾,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합법적사용과 비합법적사용의 쌍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제3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어떠한 조건하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1. 직접침해형 사례

2.1.1. Napster사건

1999년 미국에서 개발된 냅스터는 사용자들이 음악파일의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이를 실행할 MusicShare와 함께 인터넷사이트에 무료로 배포되었다. 이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는 냅스터사의 중앙서버에 접속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다른 사용자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레코드협회(RIAA)의 산하에 있는 음반회사들은 이를 통해 파일교환을 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작권의 직접침해로, 그리고 냅스터사에 대해서는 불법한 도구를 제공한 자로서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을 진다고 하여 2000년 6월에 연방지방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³⁾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그 신청을 인용하자 냅스터사가 상소를 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의 직접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⁴⁾.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쟁점은 첫째, 냅스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사용자와 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의 『직접침해』⁴⁾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인 음반회사의 주장에 대해 피

고인 냅스터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다른 사람이 복사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검색인덱스에 업로드한 냅스터의 사용자는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악곡을 포함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냅스터의 사용자에게 대해서도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이 두 개의 권리에 대해 침해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냅스터사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선별 및 구매를 위한 사전감상으로써 샘플링에 해당하거나 이미 적법하게 구입한 음악CD에 담긴 곡을 공간에 구애받지 않게 이용하기 위하여 MP3파일형태로 변환한 공간이동(Space-Shifting)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저작권법제107조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둘째, 원고인 음반회사들은 이러한 직접책임을 전제로 냅스터사에 대해 개별 사용자의 침해행위에 관한 불법도구를 제공한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선 항소심은 『기여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알면서 이를 유도 및 발생시키게 하거나 또는 중대한 기여를 한 자”라고 정의하여, 그 요건으로서 인식의 요건과 관여의 요건을 들고 있다. 즉 i) 「인식(knowledge)」이란, 냅스터사가 직접 저작권침해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저작권침해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의제적(擬制的) 인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적법행위에도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저작권침해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본 법원은 컴퓨터시스템운영자가 시스템상에서 특정의 소재가 침해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시스템에서 제거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그 직접침해를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냅스터사에 대해 기여책임을 인정할 충분한 인식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ii)

2)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가라오케 술집에서 손님들이 유료로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한 클럽 캐츠아이사건에서 “업소에서 가라오케만 주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가라오케테이프의 제공 및 손님에 대한 권유행위 등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손님뿐만 아니라 업소도 저작물의 이용주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하여 손님의 연주를 업소 경영자의 연주와 동일시하여 직접침해를 인정하여 업주에게 손해배상명령을 인정한 사건이다(最高裁判決昭和63年3月15日).

3) 우리나라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후일의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는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 이론으로서 직접책임, 기여책임, 대위책임 등이 있다.

「관여(contribution)」의 요건에 대해서도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사가 직접침해를 위한 「장소 및 편이」를 제공하여 침해행위에 중대한 관여를 하였다고 하는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또한 『대위책임』은 본래 고용관계로부터 발전한 법리(사용자책임)로서, 저작권법 등 다른 분야로도 발전되었다. 즉 피고가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한 및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직접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론으로써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한 및 능력과 직접 경제적 이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선, i)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한 및 능력」의 요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사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냅스터사가 독자의 재량에 의해 어떤 이유이든 또는 그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을 거부하거나 어카운트를 삭제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냅스터사에 대해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감독능력에 대해서는 연방지방법원은 냅스터사가 위법한 MP3의 파일교환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은 냅스터사가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파일명에 대한 인덱스의 감시에 그친다고 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연방지방법원은, ii) 「직접 경제적 이득」의 요건에 대해 냅스터사가 현재는 수입이 없지만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배너광고 등에 의한 장래의 수입을 예견할 수 있고, 수입의 규모는 “사용자층의 증가”에 직접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직접적 경제적 이득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경제적 이득이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재를 이용 가능한 것이 고객에 대해 「고객의 역할」로 작용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하여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받아 들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연방항소심은 냅스터사가 개별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작품을 복제, 다운로드, 업로드,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고 또 피고인 냅스터사의 서비스 없는 음악파일을 찾거나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

라, 기술적 통제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한 원심을 받아 들었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의 금지명령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1.2. File Rogue 사건

파일로그는 냅스터의 일본판 사건이다. 즉 두 사건 모두 P2P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중앙서버를 통해 사용자 상호간에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냅스터의 경우와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 즉 파일로그(File Rogue)란,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교환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가 외국에 중앙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경유하여 이 서버에 접속하여 오는 불특정다수의 컴퓨터에 장치된 파일로부터, 동시에 그 서버에 접속한 다른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일본을 대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를 말한다[13].

이 사건의 원고인 일본 저작물관리회사(JASRAC)는 2002년 1월 그의 승낙 없이 위와 같이 음악파일 교환서비스를 제공한 피고(MMO)에 대해 원고가 갖고 있는 저작권(자동공중송신권,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파일송수신금지 및 손해배상을 동경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⁵⁾ 이 사건은 첫째, 피고가 본건 관리저작권에 대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것이 인정된다면 둘째,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는지도 그 쟁점이 되었다[14]. 다만 이 사건에서도 동경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전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냅스터사건과 동일하다. 즉 전자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한 채로 피고 서버에 접속한 송신자의 컴퓨터는 중앙서버와 하나가 되어 정보가 기록된 자동공중송신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위의 전자파일이 수신자 컴퓨터에 송신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송신가능화권 침해라고 하고, 또 이것을

5) 미국과 일본은 저작권의 지분권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미국의 배포권과 복제권이 일본의 자동공중송신권과 송신가능화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송신하는 것은 자동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7].

동경지방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마치 냅스터사건에서 항소심이 “다른 사람의 복제를 위하여 중앙서버에 검색인덱스파일명을 업로드한 냅스터의 사용자(송신자)는 원고의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송신가능화권, 자동공중송신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원은 이러한 지분권(支分權)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지만, 미국의 저작권법에는 그러한 지분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연방항소심은 배포권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송신자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모두가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점에서도 동일하다. 한편 수신자에 대해서 연방항소심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음악을 포함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냅스터의 사용자(수신자)는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동경지방법원은 수신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에서 기여침해 및 대위침해가 판례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서버 운영자의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사용자의 직접침해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도 중앙서버 운영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태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수신자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 한다.⁶⁾

이와 같이 피고서버에 접속한 개개 사용자들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자동공중송신권, 송신가능화권)을 직접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책임을 요구한 것은, 첫째 사용자가 피고 서버에 접속하면 그의 개인정보⁷⁾가 서버에 업로드되어 IP주소 등을 알 수 있지만, 프로바이더가 이를 개시(開示)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둘째, 피고서버에 접속한 불특정다수의 개별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제공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

따라서 동경지방법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부터 본 사건에 관한 “피고가 송신가능화권 및 자동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i)피고 행위의 내용·성질, ii)사용자가 하는 송신가능화 상태에 대한 피고의 관리·지배의 정도, iii)피고의 행위에 의해 얻을 동피고의 이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저작권침해의 주체라고 인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침해한 사용자에게 불법도구를 제공한 이유로 2차적 책임을 인정한 냅스터사건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여기서 동경지방법원이 피고를 침해의 주체로 인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 서비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판되고 있는 음반을 복제한 MP3파일로 교환시키기 위해 기회의 제공과 그 외의 모든 서비스를 피고가 스스로 직접, 그리고 주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송신가능화 행위 및 자동공중송신도 피고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피고가 본건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음악파일의 송신가능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악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것은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이를 근거로 동법원은 피고를 저작권침해의 주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중간판결을 하였다.

2.2. 간접 침해형 사례

2.2.1. 소리바다사건

2000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소리바다는 한국 최초의 P2P방식에 의한 음악파일공유시스템으로서 한국의 냅스터라고 하는 별칭과 함께 약 450만명이 가입하여 하루 평균 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무료사이트로 성장하였다. 한국음반협회는 이러한 소리바다

6) 동경지방법원은 수신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수신자에 대해서는 수신한 파일이 송신가능화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여 다운로드하고 있는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수신한 파일이 송신가능화상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사적사용만으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일본 저작권법제30조 1항에 의하여 바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7) 중앙서버에 업로드되는 개인정보로는 파일명, 파일패스명, 사용자ID, IP주소, 포트번호 등이 있다.

8) 파일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직접침해하는 사용자의 대부분은 배상할 재산이 전혀 없는 개인이거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사이트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파일을 상호 복제, 교환함으로써 시중에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한 음반산업의 매출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이유로 그 공동운영자인 양씨 형제를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지연되자 동협회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음반복제 및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2년 7월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조건부 사용금지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앞에서 설명한 냅스터나 파일로그와 같이 중앙서버를 두고는 있지만, 그 서버에 IP주소와 같은 사용자들 상호간 연결에 필요한 정보만을 보유하고, 그 외의 목록과 파일은 사용자들이 직접 주고받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건들과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인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피고들에게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요구하여, 이들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즉 항소심재판부는 사용자들이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CD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를 검색한 후 원하는 MP3파일을 송신 받아 컴퓨터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는 저작권법제30조의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의 각각 복제권⁹⁾과 배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직접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서비스제공자인 피고들의 어떠한 관여행태(行態)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다만 피고들은 문제의 파일을 그들이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로 하

여금 파일을 업·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또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앞의 직접침해사태와 유사하지만, 사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그들의 『관리·지배』 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 책임(냅스터)이나 저작권침해의 주체(파일로그)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에 대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¹⁰⁾과 형법상 방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였을 뿐이다.

우선, 음반제작자들은 소리바다 사용자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행위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서비스제공자인 피고가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또는 방조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민법제760조 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동이나 행위공동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해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해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각 행위는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3]. 그러나 소리바다의 경우 개별 사용자들이 파일교환을 하는 동안 중앙서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침해행위에 있어 소리바다에 접속이 필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밀접한 침해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임에도 프로그램 설치시 경고화면을 보여 주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일공유에 필수적인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개별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¹¹⁾ 즉 피

9) 소리바다의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악곡의 복제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당시에는 음반제작자 및 저작권접권자들에게는 전송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소리바다의 서비스제공자의 관여(소프트웨어를 제공·운영)행위가 직접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사용자와 공동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11) 피고들은 이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저작권법제102조)에 의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MP3파일의 소리바다서비스를 통한 복제의 일부라도 방지할 기술적 수단이 없었는지 의문이고, 피고들이 서비스의 기능향상을 위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저작권침해에 관해서는 경고문을 제시하는 이외에 아무런 방지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방조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고들에 대하여 민법제760조 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형사 항소심은 이와 반대로 피고들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거나, 또는 P2P 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자체를 저작권침해의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도구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통지가 없어 침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방조책임을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6].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P2P프로그램을 통한 음반파일의 공유가 대부분 허락 없는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음반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해 널리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수차례 경고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온 점, 또한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버를 운영하여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 준 것이므로, 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하였다[4].

2.2.2. Grokster사건

글록스터사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사는 각각 FastTrack과 Gnutella technology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앙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사용자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음악과 비디오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는 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한 필터링을 포함한 다른 기술적 시도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하여 광고를 보내는 등 이미 냅스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무단복제하고 있던 냅스터사의 사용자들을 자사의 사용자로 유인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것은 자사의 시스템을 사용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그들이 개발

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미국 MGM사의 음악 및 영화 등을 무단 복제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저작권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되었다.

법원은 글록스터사 등이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였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입수한 사용자의 사용방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단 가동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것을 정지조차 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소니의 「베타맥스(Betamax)」 판결처럼, 비디오테이프코더가 저작권침해에 사용 가능할지라도 그 기계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글록스터사 등은 저작권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코더나 복사기를 판매한 기업과 현저히 다를 것이 없다고 하여 그들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다[9]. 이에 대하여 원고인 MGM은 2004년 8월 항소하였지만, 연방항소심은 이른바 소니원칙을 확립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저작권법에 위반한 사용자의 다운로드에 기여하고, 이를 관리·지배한 냅스터 사건과 달리 누군가가 위법하게 파일을 업·다운로드할지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는 침해에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위책임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광고 등으로 수입을 얻은 것은 인정되지만, 사용자들의 직접침해행위에 대한 통제할 권리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책임도 없다고 하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10].

그러나 상고심인 연방대법원은, 소니사건은 침해를 위하여 그 제품이 사용된다는 것을 사실상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설계 또는 배포만으로는 침해의 의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써, 소니사건의 룰은 본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저작권침해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을 배포한 자는 침해 촉진의 명시적인 표현 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부터 그것이 단순한 배포가 아니라 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제품을 사용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기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1]. 따라서 본 판결은 합법적사용과 비합법적사용이 모두 가능한 P2P소프트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더라도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침해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만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간접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

여, 결국 소니판결에서 확인된 「기술의 중립」론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3. Winny사건

피고는 P2P기술을 가진 파일공유 소프트웨어인 위니를 개발하고 그 최신판으로 버전업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A와 B는 각각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임소프트와 영화컨텐츠 등을 인터넷상에서 접속하여 온 불특정다수인에게 자동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갖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04년 5월 A와 B를 정범으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범자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기 전에, 위니가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송수신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인용하고, 굳이 위니의 최신판으로 버전업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정범자에게 다운로드 시켜 이를 제공하여 정범자(A와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토(京都)지방법원은 “위니는 중앙서버를 갖지 않는 P2P기술의 하나로써 의의가 있으며, 그 기술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가치중립적인 기술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무한정적인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기술을 실제로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외부에의 제공 행위 자체가 방조행위로서 위법성을 갖는가 여부는, 그 기술의 사회에 대한 현실의 이용상황이나, 그것에 대한 인식, 나아가 제공할 때의 주관적 태양(態樣)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니를 포함한 파일공유 소프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태양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등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인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최신판을 공개하여 불특정다수

인이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위반죄의 방조범을 구성한다고 하였다[16].

이와 같은 원심에 대하여 항소심은 “가치중립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이,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자가 불특정다수인 가운데에서 위법행위를 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개연성이 있다고 인식·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 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위법행위의 용도만으로 또는 이것을 주요한 용도로써 사용시키려고 인터넷상에서 권장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경우에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본건 위니를 인터넷상에서 공개, 제공할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작권침해의 용도만으로 또는 이것을 주요한 용도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권장하여 본건 위니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18].

이와 같이 원심과 항소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경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범익을 침해하는 태양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과 인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침해행위를 『권장·촉진』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FL-MASK사건¹²⁾처럼 소프트웨어 자체로부터 위법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강하게 추측되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고, 일부러 『권장·촉진』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침해적으로 사용되는 한 기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른바 소니원칙은 Grokster사건에 의해서

12) FL-MASK는 1996년에 일본의 음란물난축이 강화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화상을 가역적으로 마스크(masking)을 할 수 있는 FL-MASK의 개발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FLMASK로 마스크를 한 외설화상을 공개하고 있던 웹사이트 사이에 상호연계하여 마스크(은폐)된 부분을 제거하기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형법제175조의 음란화상의 전열방조죄로 처벌된 사건이다.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2P서비스제공자는 중앙서버의 유무와 관계 없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사례는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로써 위법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i) 소프트웨어의 외부에 대한 제공행위, ii) 그 기술의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인식·인용하고, iii) 이를 제공할 때의 주관적 태양 등을 고려하여, 그 가담형태에 따라 직접책임(2차적 책임, 침해의 주체)과 간접책임(방조)을 부과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요건에 따라 위의 판례상 논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위니사건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외부에 대한 공개 및 제공행위의 방법이 범죄성립의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앞의 모든 사례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비난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작위범으로 구성하는데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도구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외부에 제공하여 이를 다운 받게 한 행위자체”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¹³⁾ 나아가 이러한 공개 및 제공행위가 위법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ii)의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주관적 사실로서 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제공한 기술의 사회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하여 일부러 공개 및 제공한 것을 책임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우선 i)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조행위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결국 ii)의 요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인식과 인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사회에 있어서 방조란, 구체적인 범죄행위 시 또는 그 실행의 착수단계에서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방조하는 사람의 인식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살인사건의 흉기로 부엌칼이 사용된 경우에 그 칼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에게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구체적인 살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사용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즉 개발적 고의만 있으면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조 고의의 추상화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위축은 물론, 형법의 기본원칙인 겸역주의와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ii)의 요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그 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직감적 또는 도의적 책임론에 불과하고, 법률의 세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원칙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음란물이나 명예·신용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이유로 하여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제품이라고 하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지만, 현재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에서도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그가 있는 소프트웨어조차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히 위니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반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느 단계에서 그 개발자가 인식해야만 하는지 기준 또한 모호하다. 더구나 이러한 요구를 기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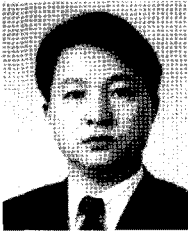
셋째, 방조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과 ii)의 상황을 인식·인용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외부에 제공시 서비스제공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권장·촉진』과 같은 주관적 태양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시한 위니사건조차, 그 성립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더구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범자와 통모를 하지 않는 한, 단순히 그 기술이 악용될지 모른다고 하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한 소리바다사건은 더욱 더 그 범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13) 우리나라 소리바다 사건은 미국과 일본과 달리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구성하는 견해가 학계의 다수설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래의 법적규제가 중앙서버를 관리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전제로 한 것으로써, Gnutella방식의 P2P에 대해서는 법적인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윤영(2005), 저작권문화. 8면이하.
- [2] 서헌재(2006), 온라인환경에서의 음악저작물 보호와 강제허락, 법학논집제30집1호, 301면이하.
- [3] 대법원 1996.5.14. 선고95다45767 판결 참조.
- [4] 대법원 2007.12.14. 선고2005도872.
- [5] 서울고등법원2005.1.12. 선고 2003나21140호.
-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 선고2003노4296판결.
- [7] A&M Records v. Napster, 239 F.3d 1004 (9th Circuit 2001).
- [8] Ginsburg, Copyright and Control Over New Technologies of Dissemination, 101 Colum.L.Rev.1613(2001).
- [9] Merto-Goldwyn-Mayer Studio, Inc. v. Grokster. Ltd., 259 F. Supp, 2d.1029. (C.D.Cal.2003), 판결본역본은 각주[13]의 井上 홈페이지에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음.
- [10] Merto-Goldwyn-Mayer Studio, Inc. v. Grokster. Ltd., 125 S. Ct, 686(2004).
- [11] MGM Studios Inc.v. Grokster, Ltd., 545 U.S. 913(U.S. 2005),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津幡笑譯(2006), MGMは本當にGrokster事件で勝訴したか, 知的財産法政策學研究第11号, 53면이하, 백승주(2008), P2P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법조57권7호.
- [12] SONY COPR. OF AMER..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1984).
- [13] 井上雅夫(2002), ナップスター事件とファイルログ事件の比較, www.venus.dyi.ne.jp/~inoue-m/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이다.
- [14] 五味由典(2004), 電子ファイル交換ソフト行使における著作権法上の責任 -ファイルログ事件を手がかりに-, 比較法研究第27号, 104면이하.
- [15] 入江勤(2005), 著作物利用行為に加擔する者の責任, 立命館法學第3号, 271면이하참조.
- [16] 大板高裁平成21年10月8日判決, 본판결의 해설로서는 松宮孝明(2010), 法學セミナー 663号, 123면, 川端博, 理論刑法學の探究, 成文堂, 21면이하.
- [17] 東京地判平成15年 1月 29日.
- [18] 園田 壽(2011), 情報社會と刑法, 成文堂, 42면이하참조.
- [19] <http://www.itlaw.jp/napster.pdf> 참조.



김형만

1986 숭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88 일본명치(明治)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1995 일본 명치대학원 법학과 (법학 박사)
 1996.9~2008.2 대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2008.3~현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사실인정, 오판, 피해자소송참여
 E-Mail: hmkim57@gwangju.ac.kr